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(노종면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호 9801

발의연월일: 2025. 4. 14.

발 의 자:노종면·허종식·김교흥

김동아 • 이훈기 • 최민희

조인철 • 황정아 • 정동영

한민수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(YTN, 연합뉴스TV)는 여론 형성에 중대한 역할을 하는 방송사로서 무엇보다 독립적이고 자율적으로 운영되어야 함. 독립성과 자율성 보장이야말로 보도전문채널이 언론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는 기본 조건임.

보도전문채널의 독립성과 자율성 보장은 대표자와 보도 책임자 선임 과정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루어지는 것에서 시작됨. 이러한 과정들은 각 사업자별로 별도로 운영되어 왔음. 그러나 현행법에는 관련 규정이 존재하지 않으며, 최근에는 보도 책임자 임명동의제가 노사 간단체협약 사항임에도 이를 무시하고 선임되는 사례가 발생하는 등 보도전문채널들의 독립성과 자율성이 침해받고 있는 상황임.

이에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대표자 선임을 위한 사장추천위원회 운영을 의무화하고, 보도 책임자의 경우 직원들의 과반수 동의가 있어야만 임명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(안 제20조 및 제21조 신설).

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

방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장에 제20조 및 제21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제20조(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대표자 및 보도 책임자의 임명 등) ①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 채널사용사업자의 대표자와 보도 책임자는 독립성이 보장된 상황에 서 공정하고 공개적인 절차를 거쳐 임명되어야 한다.
 - ②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대표자는 제21조의 규정에 따른 사장추천위원회가 심의·의결한 후보자 중에서 이사회가 임명한다.
 - ③ 보도 책임자는 제2항에 따라 임명된 대표자가 보도 분야 직원의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얻어 임명한다.
- 제21조(사장추천위원회) ①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 사용사업자의 이사회는 제20조에 따라 대표자 후보자를 추천하기 위하여 사장추천위원회를 둔다.
 - ② 사장추천위원회의 구성, 운영규정 및 후보자 추천 기한 등 필요 한 사항은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정관에 명시되어야 한다. 또한 정관 내용에 맞춰 운영규칙도 함께

만들어야 한다.

③ 제2항에 따른 사장추천위원회에 관한 정관과 운영규칙은 반드시 교섭대표노동조합(「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」 제29조제2항에 따른 교섭대표노동조합을 말한다)과 합의를 통해 결정되어야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사장 및 보도 책임자에 관한 경과조치) 이 법 시행 당시 재직하고 있던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대표자 및 보도 책임자는 이 법에 따라 대표자와 보도 책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| 현 행 | 개 정 안 |
|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|
| <u><신 설></u> | 제20조(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|
| |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|
| | 대표자 및 보도 책임자의 임명 |
| | 등) ①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|
| |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|
| | 대표자와 보도 책임자는 독립성 |
| | 이 보장된 상황에서 공정하고 |
| | 공개적인 절차를 거쳐 임명되어 |
| | <u>야 한다.</u> |
| | ②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 |
| | 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대 |
| | 표자는 제21조의 규정에 따른 |
| | 사장추천위원회가 심의・의결 |
| | 한 후보자 중에서 이사회가 임 |
| | <u>명한다.</u> |
| | ③ 보도 책임자는 제2항에 따라 |
| | 임명된 대표자가 보도 분야 직 |
| | 원의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얻 |
| | <u>어 임명한다.</u> |
| <u> <신 설></u> | 제21조(사장추천위원회) ① 보도 |
| | 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 |
| | 송채널사용사업자의 이사회는 |
| | 제20조에 따라 대표자 후보자를 |
| | 추천하기 위하여 사장추천위원 |

회를 둔다.

② 사장추천위원회의 구성, 운영규정 및 후보자 추천 기한 등 필요한 사항은 보도에 관한 전 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 사업자의 정관에 명시되어야 한 다. 또한 정관 내용에 맞춰 운영 규칙도 함께 만들어야 한다. ③ 제2항에 따른 사장추천위원 회에 관한 정관과 운영규칙은 반드시 교섭대표노동조합(「노 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」 제 29조제2항에 따른 교섭대표노 동조합을 말한다)과 합의를 통 해 결정되어야 한다.